

플레젠티언 연합 교육 지구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항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고지

플레젠티언 연합 교육 지구는 1973년 재활법 제504 항에서 명시하는 장애가 있을 수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해당 법적 권리를 고지하고자 합니다.

1973 년의 재활법은, "제504 항"을 포함하여, 미국 의회가 제정한 차별 금지 법령입니다. 이 법령의 목적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504 항에 따른 수혜 자격이 있는 학생은 "주요 일상 생활 활동"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생입니다. 가령: 학습, 시력, 청력, 걷기, 서기, 호흡, 집중, 사고, 의사 소통 및 자기관리와 같은 활동입니다: 또는 "주요 신체 기능" 장애로 가령: 면역계의 기능 장애, 정상 세포 성장, 소화, 방광, 신경학, 뇌, 호흡기, 순환기, 내분비 및 생식 기능과 관련된 장애입니다. 수혜 자격이 있는 학생의 장애는 일시적인 또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장애를 포함합니다. 아동의 장애 상태를 판단하는 데에는 경감 사유나 정상 참작 상황이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혜 자격: 일부 학생은 또한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교육에 관한 법률("IDEA")에 따라 교육 서비스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연방규정집(C.F.R.) 제34조, 104부, 제504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부모 그리고/또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1. **신청**. 제504항의 보호규정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초등, 중등 및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활동 운영에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대상에게 해당됩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31.1항.**
2. **부모의 권리**. 귀하는 제504항에 따라 교육 지구로부터 귀하의 권리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32항.**
3. **무료적합공교육(FAPE)**. 제504항에 의거하여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장애가 없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개별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적절한 공립 교육을 무료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33항.**
4. **무료 교육**. 제504항에 의거하여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장애가 없는 학생 또는 그 학생들의 부모에게 비용이 부과되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지구가 귀하의 자녀를 교육 지구가 운영하지 않는 단체의 보조, 복지 혜택 또는 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추천하는 경우, 해당 보조, 복지 혜택 또는 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교통비를 포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및 이와 유사한 제3자는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 사실이 유효한 경우, 이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33항.**
5. **면학 분위기**. 귀하의 자녀는 장애가 없는 개인들과 최대한 적합한 범위 내에서 함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34항**
6. **유사한 시설**. 제504항에 의거하여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장애가 없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시설에서 교육 서비스 및 교육 관련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34항.**

7. **평가.** 귀하의 자녀는 최초의 제504항 배정 시, 그리고 이 후 배정 사항이 변경됨에 있어 그 비중이 큰 경우,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35. 5항.**
8. **평가 절차.** 시험과 기타 평가 절차는 미국연방규정집 제34 조에서 요구하는 유효성 및 행정 집행 사항을 준수하여 교육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특정 영역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훈련을 받은 해박한 지식이 있는 교직원이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35항.**
9. **배정.** 배정에 대한 결정은 귀하의 자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개인들을 포함한 집단이, 다양한 자원에서 유출한 평가 자료를 토대로 하되, 이를 문서화하고 모든 배정의 선택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최대한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 일반 교육 시설의 요구 사항과 유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항.**
10. **재평가.** 제504항에 따라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배정 사항이 변경됨에 있어 그 비중이 큰 경우,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기적인 재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35항.**
11. **고지.** 귀하는 귀하와 귀하의 자녀의 권리를 고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기록을 검토할 권리, 공정한 행정 청문회에 대한 권리, 변호인의 대변을 받을 권리, 귀하의 자녀를 대신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한 절차를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36항**
12. **비학업적 교육서비스.** 귀하의 자녀는 교과와 활동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의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상담, 운동, 여가활동 및 특별 이익 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이 포함됩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39항**
13. **기록.** 귀하는 귀하의 자녀의 관련 교육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 36항.**
14. **적당한 적법절차.** 귀하는 귀하의 자녀의 장애 식별, 평가, 또는 교육 프로그램 배정과 관련한 교육 지구의 조치에 대하여 공정한 행정 청문회 권리가 있으며, 청문회에 부모 자격으로 참여할 기회와 전문 변호인에 의하여 대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36항.**
15. **정기적인 검토.** 제504항에 따라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해당 제504 항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 번 소집됩니다. 단, 귀하가 귀하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504항 계획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회의는 부모의 요청이 있을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소집됩니다.
16. **징계 조치 전 고려 사항.** 제504항에 따라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징계 조치에 앞서, 학생의 징계 대상 행위가 학생의 장애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제504항에 따라 장애가 있는 학생의 장애 식별, 평가 또는 프로그램 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절차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구는 학부모가 1 단계와 2 단계 절차를 활용하여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유하지만, 귀하가 바로 3 단계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1 단계: 서면으로 귀하의 자녀의 제504항 팀 회의를 소집하여 귀하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거나, 또는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요청하십시오. 이에 따른 회의는 부모의 요청이 있을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소집됩니다.

2 단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다음의 교육지구 제504항 담당 행정관(District Section 504 Administrator)에게 면담을 요청하십시오:

Leslie Heller, Director Student Services
(레슬리 헬러, 학생복지서비스 부장)
 5758 W. Las Positas Blvd, Pleasanton, CA
 94566
925-426-4290

3 단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초 요청 시, 학부모/보호자는 서면으로 공정한 행정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04 항에 의거한 공정한 행정 청문회 절차를 요청하고 집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제504항에 의거한 공정한 행정청문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교육지구의 제504항 담당 행정관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반드시 일반적으로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공정한 행정청문회를 요청하는 안건에 관한 교육지구의 결정을 고지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구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정당한 사유나 상호 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학부모가 서면으로 제504 항 팀 회의 소집 요청 시, 또는 해당 회의 참여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b) 서면으로 요청 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i)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교육 지구가 내린 결정(들) 사안의 구체적인 성격.
 - ii) 개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
 - iii) 요청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관련 정보.
- (c) 서면으로 행정 청문회 요청이 접수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교육지구의 제504항 담당 행정관은 공정한 행정청문회를 집행할 청문관을 선정합니다.
- (d) 교육지구가 선정한 행정 청문회 집행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i) 제504항과 관련된 교육지구의 결정을 검토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ii) 교육 지구의 직원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아니어야 하며, 또는 교육지구가 속한 특별교육지역계획지구(SELPA)의 청문회 집행관 외에 그 어떠한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iii) 문제가 되는 사안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적 또는 개인적 개입이 없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e) 학부모의 요청이 접수된 후 60 일 이내에 행정 청문회가 소집되고,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결정이 서면으로 고지됩니다.
- (f) 행정 청문회 관련 당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됩니다:
 - i) 제504 항에서 의미하는 장애가 있고 수혜 자격이 있는 개인의 문제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개인과 동반하여 조언을 받을 권리.
 - ii) 서면 및 구두로 증거를 제시할 권리.
 - iii) 관련 사실, 법적 결론 및 청문 집행관이 작성한 판결문을 서면으로 받을 권리.
 - iv) 행정 청문회 기록을 문서 또는 음성을 전자상으로 기록한 형태로, 요청인의 비용 부담 하에 요청할 권리.
 - v)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 청문회 소집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최소 5 일 전까지 사건 관련 상대방 측이나 당사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행정 청문회에서 증거로 도입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
 - vi)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련 상대방 측이나 당사자들이 전문 변호인의 대변을 받는다는 사실을 행정 청문회 소집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최소 10 일 전까지 고지 받을 권리.
 - (g) 청문 집행관은 미국연방규정집 제34조 제104부에 명시된 법적 기준에 따라 사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 (h) 관련 당사자 어느 측이라도 관할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행정 청문관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 전문 변호인 수임 비용, 전문가 증인 비용 및 기타 비용은 법적으로 승인으로 범위에서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17. 교육지구 수준의 불만 접수. 제504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자녀의 장애 식별, 평가 및 프로그램 배정을 포함하여, 귀하는 교육지구의 제504항 담당 행정관에게 불만 사항을 접수하여 신속하고 공평한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사무국(OCR) 수준의 불만 접수. 귀하는 또한 인권사무국(Office for Civil Rights)에 불만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담당하는 지역 사무국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미국 교육부, 인권 사무국)
50 United Nations Plaza
San Francisco, CA 94102
대표 전화: 415-486-5555, TTY: 800-877-8339
팩스 415-486-5570
이메일: ocr.sanfrancisco@ed.gov

19. 정학/퇴학 징계 처벌 시 고려 사항.

- (a) 제504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생의 장애에서 비롯된 또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인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또는 교육지구가 해당 아동의 제504항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결과로 해당 아동의 프로그램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징계 사유로 인한 프로그램 배정 변경은 이하 (b)항에서 기술하는 정형화된 형태로 간주되는 일련의 프로그램 배제 조치(징계 목적)의 결과이거나 또는 퇴학 조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b) **정형화된 형태의 프로그램 배제.** 수업 일수 연속 10 일 이상 기간에 해당하는 정학 조치의 결과, 또는 10 일 이하인 정형화된 형태로 간주되는 일련의 프로그램 배제로 인한 결과로,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 총 10 일 이상이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면서 인접한 기간 내에 발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 504항 계획 팀은 회의를 소집하여 이러한 행위가 학생의 장애에서 비롯되거나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또는 교육지구가 해당 학생의 제504항 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c) **퇴학 조치.** 퇴학 조치를 고려할 때, 제504항 팀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 학생의 징계 조치 대상 행위가 학생의 장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또는 교육지구가 해당 학생의 제504항 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회의 소집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고지되어야 합니다.
- (d) **평가.** 퇴학 조치 그리고/또는 "상당한 프로그램 배정 변경"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정형화된 형태의 프로그램 배제 조치는 정당한 평가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위의 (a)항에서 (c)항까지 기술된 바와 같은 해당 학생의 조치 대상 행위가 아동의 장애가 발현한 형태인지를 판단하기위한 평가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제504항 팀이 문제가 되는 아동의 행위가 아동의 상당한 프로그램 배정의 변화라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 배정이 적절한지, 그리고 만일 배정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2011년 11월 28일자 인권사무국(OCR) 전문가 견해서, 112 LRP 7415.)
- (e) 문제가 되는 행위가 학생의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지구는 장애가 없는 학생이 한 행위에 대한 조치와 같은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합니다.
- (f) 학부모/보호자가 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의 14 항의 단계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g)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팀이 결정한 사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공정한 행정 청문회를 요청함으로써, 팀이 학생의 문제가 되는 행위가 학생의 장애에서 비롯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장애와 관련이 있거나, 교육지구가 해당 학생의 제504항 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을 근거로 교육지구가 해당 학생에게 퇴학 또는 10 일 이상의 정학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h) **징계 조치 고려 배제 사항.** 이러한 절차적 보호 조치는 현재 불법 약물을 복용하거나 알코올을

사용하는 학생, 불법 약물 또는 알코올의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을 대상으로 취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법령 제 20조, 제705 (20) (c) (iv)항.

알림: 본 고지서에 요약된 절차적 보호 조치는 수혜 자격을 갖춘 장애가 있는 학생 또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의 제504 항에 따라 절차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교육에 관한 법률 (IDEA)에 따라 절차 적용을 요청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IDEA에서 준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